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82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이개호·민형배·위성곤

서삼석 · 천하람 · 조인철

부승찬 • 황명선 • 어기구

정진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,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,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.

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조의2제1호).

법률 제 호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의2제1호 중 "지도"를 "지도 및 처방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	제1조의2(정의)		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의료기사"란 의사 또는 치	1		
과의사의 <u>지도</u> 아래 진료나	<u>지도 및 처방</u>		
의화학적(醫化學的) 검사에			
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			
		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